

전기관련 법령 개정 추진 현황

◆ 자료정리/기획관리팀 [문의 : ☎02)875-4471]

1. 전기사업법령 개정 추진현황

가. 추진일정

구 분	입법예고	공포일	시행일
법('98년도)	'98. 9. 12	'99. 2. 8	'99. 8. 9
법('99년도)	점 토 중	-	-
시 행 령	'99. 4. 13	'99. 8. 6	'99. 8. 9
시행규칙	'99. 4. 13	9월 예정	공 포 일

나. 주요 개정내용

(1) 법 전면 개정 촉수

- 전면개정 초안 작성(산자부 전력산업구조개편단 주관)

(2) 시행령 개정

- 안전관리담당자 해임시 재선임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완화
- 안전관리대행사업체의 등록증 의무갱신제도 폐지(3년마다 갱신) 등

(3) 시행규칙 개정

- 전압 및 주파수 등의 유지기준 폐지(한전 공급 표준전압 등)
-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 신청 시기를 “10일전”에서 “7일전”으로 완화
- 전기안전관리규정 비치 의무제도 폐지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시기를 “공사착공전”에서 “사용전 검사전”으로 완화, 휴지중인 전기설비는 안전관리담당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 심야전력 및 농사용전력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기간

- 일정기간동안 휴업중인 상태
- 대행사업체의 대표자 자격 폐지

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주요 민원 내용

-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선임시기 조정 민원 건

- 개정 요청내용

현 행	입법예고(안)	민원내용	협회의견
제58조(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 등)	제58조(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 등)	제58조(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 등)	제58조(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 등)
① -----	① -----	① -----	①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착공 때에는 사용전 검사전 또는 전 또는 사업 전 결사전 또 개시 전에는 사업 개시 전에 선임하는 사업 개시 전에 선임하여 야 한다. 다만, 여야 한다 선임 하여야 한다 주택 긴설축전법 한다.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될 때 선임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전 검사전 또는 전 또는 사업 전 결사전 또 개시 전에는 사업 개시 전에 선임하여 야 한다. 다만, 여야 한다 선임 하여야 한다 주택 긴설축전법 한다.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될 때 선임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전 검사전 또는 전 또는 사업 전 결사전 또 개시 전에는 사업 개시 전에 선임하여 야 한다. 다만, 여야 한다 선임 하여야 한다 주택 긴설축전법 한다.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될 때 선임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전 검사전 또는 전 또는 사업 전 결사전 또 개시 전에는 사업 개시 전에 선임하여 야 한다. 다만, 여야 한다 선임 하여야 한다 주택 긴설축전법 한다.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될 때 선임할 수 있다.

○ 최종 협의내용

- 협행규정으로 두기로 합의
- 시행령 제58조제1항은 개정 없이 협행규정을 존치 하기로 최종 결정

2. 전력기술관리법령 개정 추진현황

가. 추진일정

구 분	입법예고	공포일	시행일
법	'98. 9. 12	'99. 2. 5	'99. 2. 5
시 행 령	'99. 2. 25	9월 예정	공포일
시행규칙	'99. 2. 22	9월 예정	공포일

나. 주요 개정내용

(1) 시행령 개정

-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보수공사의 경우 설계감리 및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
-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기준중 기술인력, 사무실면적 완화
-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기준 변경사항 신고 수리기판을 정부에서 협회로 이관

(2) 시행규칙 개정

- 설계한자가 감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폐지
- 각종 민원업무 처리기간 규정 신설

다. 시행공포 지역 사유

- 건설교통부에서 부처간 합의를 해주지 않아 차관회의 상정 지역

라. 건설교통부 주장내용

- 건축법상 “건축설비”의 정의에서 “전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건축사법상 “건축사보”의 정의에서 “전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내의 전력시설물은 건축관련 법령에 의거 감리를 하도록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관련근거 삭제 요청

마. 산업자원부 및 협회 의견

- 전력기술관리법 제정 당시 '95. 12. 5 당정회에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전력시설물(건축물

내의 전기설비 포함)의 전기공사감리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시행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된지 3년이 경과된 지금, 이제와서 다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건설시장의 경기악화로 건축사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됨
- 또한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감리영역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건기법과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시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전력시설물의 설계, 시공 및 안전관리 등 모든 전기관련 업무가 전기관련 법령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데, 유독 감리업무만 건설관련 법령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 내지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전기공사의 부실화로 전기화재 등이 증가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므로 전기공사감리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국무조정실 의견

- 산업자원부의 의견과 같이 법 개정시 논의될 내용을 가지고 시행령 개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기감리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교부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차관회의에 부처간 합의없이 상정시키겠다고 함

사. 향후 추진 방향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자부 의견대로 시행 공포하고
- 차기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시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2개 법령에 중복되어 있는 규정을 정비요청하여 타법령 개정에서 건축관련 법령에 있는 전기감리에 대한 관련 조문을 삭제토

록 추진

○ 정비 내용(예)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중 “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에서 “전기” 문구 삭제
-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건축설비” 중 “전기” 삭제
-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 중 “전기” 삭제

3. 전기공사업법령 개정 추진현황

가. 추진일정

구 분	입법예고	공포일	시행일
법	'97. 8. 2	'99. 1. 29	'99. 7. 1.
시 행 령	'99. 2. 25	'99. 6. 30	'99. 7. 1
시행규칙	'99. 2. 25	'99. 7. 16	'99. 7. 16

나. 주요 개정내용

(1) 시행령 개정

전기공사 기술자를 기술자격자 외에 학력 및 경력자 포함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관리기관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 전압별로 구분하여 공사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배치도록 규정

(2) 시행규칙 개정

공사업의 면허제에서 등록제 완화에 따른 등록서류 명시 전기공사 기술자의 경력관리기관을 주무장관이 고시도록 규정

다. 법령 개정 추진경위

(1) 법 개정 당시 상황

- '97년도에 입법예고 당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반발로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나, '98년 6월경 급작스럽게 조문을 조정하고 개정을 추진하게 됨
- 입법예고후 수정된 법안을 법제처에 검토 요청할 당시 법 제32조제3항에서는 전기공사 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공사업자단체”에

위임토록 되어 있었으나, 협회에서 산업자원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국회의장 등에 전의를 제출한 바, “공사업자단체”를 삭제하지는 못하고 “공사업자단체 및 전기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단체”로 수정하여 최종 법안 통과

(2)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당시 상황

- 입법예고 당시에는 전기공사 기술자의 등급별 경력산정연수가 전력기술관리법의 기준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여, 동일인의 전력기술인이 업종에 따라 여러 가지의 등급을 갖게되어 혼란이 예상되므로 공사협회 및 산업자원부에 조정 전의를 하였으나 협회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민회의에 조정전의 함
- 국민회의 주관으로 산업자원부 및 양단체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공사기술자의 등급별 경력년수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맞추기로 최종결정

다. 공사기술자 관리기관 지정고시

- 지정기관 : 전기공사협회
- 고시 일자 : '99. 8. 25
- 시행일자 : 경력기술자의 인정지침고시가 공고되지 않아 아직 미시행 ('99. 9. 3일 기준)

4. 전기안전법 제정 추진현황

가. 추진 배경

(1) 전기안전법 제정 배경

- '98년 10월에 발생한 부산 냉동창고의 화재 사건을 계기로 여러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안전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형사고의 근원적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내에 “안전대책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으며, 이때 노동부에서는 (가칭)산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산업분야의 안전관련 업무를 통합하려는 움직임 보임
- 이에 전기·가스·소방설비분야의 안전은 각 사업장뿐만 해당되지 않고 각 가정까지,

즉 불특정 다수인인 국민의 안전과 관계가 있으므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는 개별적으로 법을 정비하여 안전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각 분야별 별도법을 제정추진하기로 협의

- 따라서 전기분야 분과위원회들이 전기안전관리제도 정비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분과위원들은 전기분야 각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를 한 결과, 작금의 상황이 전기안전의 중요성이 망각되고 IMF상황 하에서 규제완화라는 경제논리에 따라 전기안전제도가 뿌리채 흔들림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기안전제도 정착을 위한 법제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됨

(2) 전기안전법 제정 준비위원회

- 국회 안전대책위원회 분야 구성
 - 산업안전분야(노동부)
 - 건설안전분야(건설교통부)
 - 전기·가스·소방분야(산자부, 행자부)
- 전기안전분야 “법제정 준비위원회” 구성
 - 국회 안전대책위원회 위원 2명(고재홍 전문위원, 정재희 교수)
 - 산업자원부 전기안전담당 사무관 1명
 - 한국전력공사 2명
 - 한국전기안전공사 2명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2명
 - 한국전기공사협회 2명

(3) 전기안전법 제정에 따른 협회 추진내용

일 시	각종 회의	조 치 사 항
'99. 1. 12.	제 16 차 이 사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법 제정 배경 및 방향
'99. 6. 14.	법 제 도 위 원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위원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법 제정 배경 설명 및 초안 배포
'99. 6. 29.	지 부 장 회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부장회의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법 제정 배경 설명 및 초안 배포

일 시	각종 회의	조 치 사 항
'99. 6. 15.	제 18 차 이 사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법 초안 보고
'99. 7. 17.	지상공청회 실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지 7월호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렴 기간 : '99. 7. 31까지 - 정기검사, 사용전검사 및 안전공사의 대행업무 등의 조항 조정 견의
'99. 7. 14	안전전문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 사용전검사 및 안전공사의 대행업무 등의 조항 조정 견의
'99. 7. 27	공청회 실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영등포 교육장 ○ 주 관: 본 협회 ○ 결 과: 제정(안) 반대
'99. 7. 29.	협회의견 제 출 (산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법 제정 자체는 찬성 - 전기사업법상 안전관리부분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이관

(3) 전기안전법 제정의 향후 방향

국회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전기안전법 제정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전기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식의견을 받은 결과, 안전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 및 단체에서 전기안전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산자부는 국민회의에 전기안전법 제정반대에 대한 공식의견을 제출하여 제정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중